

Contents

- 01 권두언
시·군·구 통합기준 관련 주요 쟁점 및
통합 추진 방향
- 03 이달의 이슈
① 시·군·구 통합기준과 향후 일정
② 시·군·구 통합기준의 이해와 적용방안
③ 시·군·구 통합기준에 관한 방향 정립의
주요쟁점
- 09 자치단체 우수사례 - 대전 광역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카페

- 11 도시통계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유형
- 13 지방자치단체 동향(9월)
- 14 연구원동정-10월 연구원 소식
- 15 알림마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①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번역서 발간
②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안내

KRILA_2011

2011년 10월호

제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27호

발행인 한표환

편집인 뉴스레터 위원회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락처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디자인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무료)

e-mail :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에서 Newsletter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 통합기준 관련 주요 쟁점 및 통합 추진 방향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체제개편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8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발표하였다. 통합기준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체 자치단체를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마련하다보니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언론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통합기준을 발표함으로써 특별법에 의거한 시·군·구 통합작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시·군·구 통합추진의 사례로는, 1994년부터 시행된 도농통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도농통합을 통하여 총 40개의 통합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고, 1998년에는 3여(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자치단체 통합 사례로는 작년에 이루어진 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합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더불어 실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90년대의 도농통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통합한 사례는 여수시와 창원시가 유일하다.

과거 시군간 통합에서 어떤 기준들이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90년대 도농통합의 경우에는, 역사적 동질성, 동일 생활권, 지형적 조건,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사무소 소재지 동일 여부 등의 기준이, 2009년 자율통합에는 경쟁력 기준과 자족성 기준으로 구분한 후에 재정력, 인구, 면적 등으로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인구와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한 덴마크, 핀란드, 독일의 라인란트-팔츠주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까지 '평성대합병'을 추진한 일본도 중앙정부가 합병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중심으로 인구가 대표적 기준으로 제안되었다.

통합기준 발표 이후의 일정을 살펴보면,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아서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2012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치단체가 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는 통합건의 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향후, 시·군·구 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될지 아니면 논의 수준에서 끝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호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쟁점의 주요내용, 시·군·구 통합의 기준, 통합추진의 일정 및 방향 등에 대해서 조감하고자 한다. 시·군·구 통합의 기준을 정치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에 근거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면 통합기준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기준의 설정은 시·군·구 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합기준의 제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에게 자기 지역이 통합에 적합한 지역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각자가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인접 자치단체와 통합을 통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달의 이슈 _ 1

시·군·구 통합기준과 향후 일정



박정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개편기획국장)

가 실시되면서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지방행정의 기본이 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8건의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그간의 논의수준을 한 단계 뛰어 넘어 보다 가시적인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10년 10월 1일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 기본방향, 추진 과제,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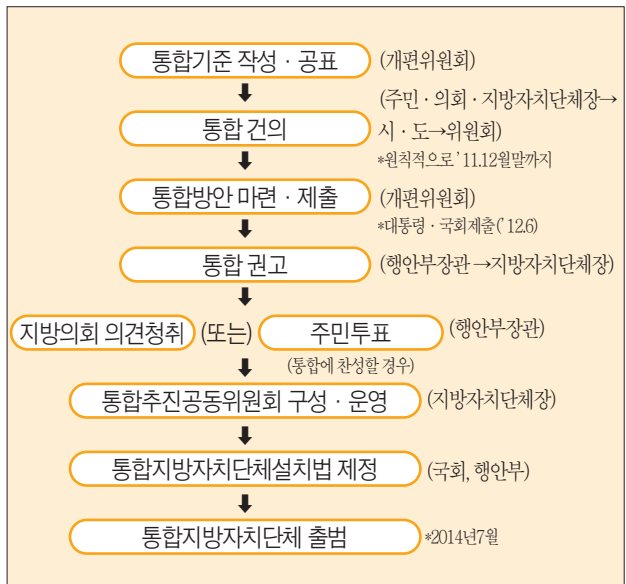
특별법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그 추진과제로 ①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개편 ② 도의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③ 시·군·구의 개편 ④ 읍·면·동 주민자치 ⑤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⑥ 지방분권의 강화 등 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시·군·구 개편'은 교통·통신·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활·경제권이 확대되고,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구조가 변화함에도 행정구역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시·군·구의 통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법에서는 시·군·구 통합의 최초 절차로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작성하여 공표토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지난 9월 8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함으로써 통합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군·구 통합기준은 (1)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2) 특별법에 제시된 통합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3)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본방향의 테두리 안에서 시·군·구 통합의 1차적 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 중에서 ①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②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③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④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을 2차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시·군·구 통합절차〉



이러한 기준은 통합대상지역을 선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시·군·구 통합에 대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여, 주민 판단의 재량 폭을 넓혀 활발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거친 후에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통합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또는 주민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로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서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합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통합의사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지역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청사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

주민의 뜻으로, 지역의 미래로
시·군·구 자율통합
자치권이 강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율통합으로 만들어 갑니다.

통합 추진 절차 및 향후 일정

- 1. 통합 대상 선정
- 2. 통합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
- 3. 주민투표 실시
- 4. 통합 시·군·구 출범
- 5. 통합 시·군·구 출범
- 6. 통합 시·군·구 출범
- 7. 통합 시·군·구 출범

* 주민이 통합을 원하지 않거나 시·군·구 통합을 원하지 않는 지역은 제외
지역별, 또는 자치단체별마다 진행할 수 있음
*** 지역별, 지역별을 구분하여 실시 가능
**** 주민투표 실시 시 주민투표 실시 후 30일 이내에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용인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자치제도과 : 02-2100-3645
www.mopas.go.kr

"자치권이 커지면 경쟁력 커지는 새마을 정책입니다"

Q & A

- 주민 자발적으로 통합할 수 없나요?**
▶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자발적 통합을 우선으로 하고, 시·군·구 자율통합 시 주민의 선택입니다.
- 통합 대상 지역이 어떻게 선정되나요?**
▶ 주민 편의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준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내년 6월까지 통합이 아닌 시·군·구 통합을 추진할 수 없나요?**
▶ 올해 안에 통합이 결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 시·군·구 통합이 제각각 다를 수 없나요?**
▶ 시·군·구 통합 추진과정에 따라 통합 대상 지역별, 통합 시·군·구 통합 추진과정에 따라 통합 대상 지역을 결정합니다.
- 통합 시·군·구 출범 시 주민투표 실시할 수 없나요?**
▶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결정합니다. 주민투표 실시 지역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결정합니다.
- 주민이 통합을 원하지 않거나 시·군·구 통합을 원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할 수 없나요?**
▶ 시·군·구 통합 추진과정에 따라 통합 대상 지역을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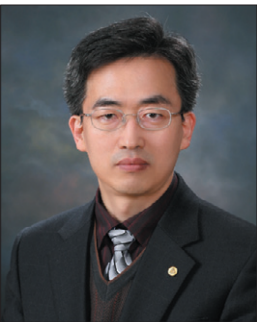
부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법이 제정되면 2014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시군구 통합에 대한 지역간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과 같은 논의의 장을 통해 올바른 정보가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통합논의의 중심과 그 판단의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도록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의 생활 터전이자 후세대가 이끌어 나갈 지역의 발전과 국가를 위하여 한 발치 물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군·구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달의 이슈 _ ②

시·군·구 통합기준의 이해와 적용방안



박종관
(백석대 교수)

행정구역의 적정화 혹은 합리화 문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이 지방자치 수행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행정구역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통해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적정 행정구역의 규모는 이렇게 제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타당성을 띤 행정구역 기준의 제시란 거의 불가능하다. 행정구역의 기준은 각국의 전통과 역사, 사회문화적 배경, 국민의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행정구역설정 기준은 행정능률성, 공동사회성, 참여, 자주재원, 편의구역, 지리적 조건, 교통통신 발달 등이다. 외국학자들은 공동사회, 주민참여, 행정능률, 지방정부 간 협력을 보다 더 강조한다. 반면에 국내학자들은 자주재원조달능력과 편의구역 및 지역개발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잘 발전된 외국에서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나 주민참여, 단체간 갈등의 해소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재원조달능력, 편의구역, 지역개발 등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행정구역개편기준의 한계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계량화가 가능하지만(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등) 대부분의 기준들은 계량화가 어렵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도 곤란하다는 비판, 기준들이 상호 모순된다는 비판, 기준간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및 기준 간 우선순위 적용문제의 한계, 국가 전체를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층과 구획으로 획정하기 곤란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시군구 통합관련 기준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볼 필요도 있다. 영국은 수용성, 광범한 지원, 전략적 리더십, 참여 권한 부여, 서비스 효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도주체의 개편기준으로 내각관방이 내세운 경제·재정적 자립, 지리적 일체성, 역사·문화·풍토의 공통성, 동일한 생활권역이라는 4가지 판단요인을 제시하였다. 시정촌 개편 기준은 인구수, 면적, 지리적 특성, 재정상태, 생활권, 통근권 등이다. 독일은 공익판단기준과 구체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익판단기준은 ①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 역량의 강화 ② 통일적이고 균등한 삶의 질 향상 ③ 도시와 농촌의 생활여건의 격차 완화 ④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과성 제고 ⑤ 주민의 결속력 유지 ⑥ 주민근접 행정의 실현 ⑦ 지방의 균형발전 등이다. 구체적 기준은 인구규모, 면적, 공간계획·지역발전·인프라 측면, 경쟁력·재정력, 균형발전, 교통 및 근접성, 주민·문제 근접성, 역사적·종교적 연계성, 도시와 농촌의 관계 등이다. 스위스는 개편논의 기준으로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민주성제고, 지역발전에 대한 전망, 배분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해외사례의 분석 결과 행정구역 통합기준은 구체적 제시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과거 시군구 통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즉, 1995·1998 도농통합, 2009 지방자치단체 통합에서 활용된 기준들은 대체로 유사한 기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경쟁력 기준과 자족성 기준으로 유형화했지만 경쟁력 기준은 1995, 1998 기준과 유사하다. 경쟁력 기준은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지리적으로 다른 시·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여론이 제기되는 지역 세 유형이다. 자족성 기준은 정량적 기준으로서 인구, 면적, 재정력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시군구통합 결과를 실무적으로 따질 때 이 지표를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군구통합기준은 학자들이 제시한 기준을 기본으로 하



되 정성적 기준에서 정량적 기준의 도입, 새롭게 유형화를 도입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시군구 통합기준을 지난 9월 8일 제시했다. 개편위가 제시한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다. 2차적 기준은 1차적 기준에 충족되는 지역 중 다음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 조건은 ①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②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③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④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이 기준들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적용은 쉬우나 구체적 대상을 선별하기가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부수조항을 둬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통합건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구역개편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권 중심으로 구역

을 개편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통합기준으로 제시된 지표들은 통합하려는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부문과 연계시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지역에서는 기준의 어떤 측면을 적용할 때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하는 노력과 더불어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내 혹은 지역간 갈등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은 통합 후 자치단체의 발전과 연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더구나 행정구역개편은 각 지역의 고유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많은 논의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된 기준에 맞지 않아도 시군구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 NGO, 학자 등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시군구통합 건의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필요하다.

이달의 이슈 _ ③

시·군·구 통합기준에 관한 방향 정립의 주요쟁점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통합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의 범위, 지역별 유형화 여부, 기존 시도경계의 초월 가능성, 선거구의 조정 가능성, 특수지역의 예외 인정 여부, 통합추진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수지

역의 예외 인정 여부, 선거구 조정의 가능성 등을 제외한 네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두 가지 쟁점을 제외하는 이유는 일부 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특수지역(예: 도서지역)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통합과 관련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기준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이 필요한 자치단체를 위한 통합기준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이 필요한 지역이란 첫째는 제12조가 정한 과소 구, 둘째는 제15조 제1항이 정한 '국가가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지원책을 수립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15조는 통합기준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제12조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과소 구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의 장점으로 전국적으로는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통합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함으로써 기준 적용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며, 통합기준 설정과 관련된 정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요소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이 필요한 일부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통합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의 장점으로 통합대상이 아닌 지역에서의 통합과 관련한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통합대상 지역의 사정을 통합기준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통합기준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지역별로 유형화하여 적용하느냐, 혹은 획일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즉, 전국적으로 인구, 면적 등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통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이 다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화 수준을 정하는 데는 첫째, 시군 유형과 구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특별법 제12조 과소 구의 경우와 제15조의 시군구의 통합을 정한 규정에서도 이와 같이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도시 유형과 농촌 유형으로 구분하여 통합기준을 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도시 유형은 인구가 많고, 도로 및 교통이 집중되어 지리적 근접성이 높고, 재정자주도 등이 높은 반면, 농촌 유형은 면적이 넓으나 인구가 적고, 재정자주도가 낮기 때문에 통합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한편,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농촌 유형과 도시 유형으로 통합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과소지역과 과밀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통합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통합기준 자체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통합업무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특·광역시·도간 경계를 넘는 시군구간의 통합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특·광역시·도 경계 내에서만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특·광역시·도간 경계를 넘는 시군구간의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허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뿌리가 같은 지역 간에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인근 대도시로 통합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계, 정치계 등에서

경남매일

2011년 08월 24일 (수)
01면 종합

전국 80곳 시군구 통합대상

경남 4곳... 통영·밀양·사천·의령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지자체 통합기준안 검토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중인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최대 80개 시군구 통합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최근 시군구의 통합 기준을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으로 설정했다.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을 마련했다.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 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 3천 명 이하,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9㎢ 이하 △시군 62.49㎢ 이하

이런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통영시와 밀양시, 사천시, 의령군 등 4개 시·군이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또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왕·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 기준 면에서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8개 자치구와 3개 도시를 제외한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도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시군구에는 서울 종로·용산·동대문구, 부산 김서·부산진·동래·남·북·사하·연제·수영·상산구, 대구 서·남구, 인천 중구·용진

군·남구·부평구, 광주 동구 등이 다. 또 인천 지역으로의 통근편익을 기준에 근거하면 경기 안양·군포·의왕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전남 목포시·무안군이 통합 대상이 된다.

개편위는 지자체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을 놓고 본과위 회의에 이어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안을 의결,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발족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지방계획을 대통령과 국회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 시점은 2013년 6월이다. (박은국 기자)

15.4 X 13.8 cm

서울신문

2011년 08월 24일 (수)
11면 정치

시·군·구 최대 80곳 통합대상

지방행정체제개편 용역보고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되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을 통해 인구 및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전국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설정했다. 그러나 본과위회의의 내부 의회에서 애초에 결여되지 않아 단행할 계획까지는 확실한 진영이 예상된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자체간 이해관계도 엇갈려 통합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금천·중구 등 11곳 인구·면적기준 모두 충족

■전국 시·군·구 통합 대상지역

지역	인구(만)	면적(㎢)
서울 금천구	26만 5106	13.01
중구	13만 2822	9.96
부산 영도구	14만 6396	14.13
사천	14만 6040	13.88
중구	13만 1514	9.78
대구 중구	4만 9442	2.82
대구 중구	7만 3857	7.06
인천 동구	7만 9963	7.19
경기 의왕시	14만 7443	54.01
과천시	7만 2279	35.86
충남 계룡시	4만 3308	62.78

2011년 8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자체간 이해관계 엇갈려 논란 예상

이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연구원 등 3개 기관에 의뢰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23일 4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초 구·읍·면·동·읍면에서 전체회의 상정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확정안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행정안전부·박재관 기획재정부 장관, 임재민 국무총리실장 등과 인견위원회 3명으로 구성돼 있다.

23일 전체회의에서 유력하게 검토될 연구 용역안에 따르면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구 등 8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경기 의왕시와 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도 통합 대상이다. 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 69개 자치단체다.

■80곳은 인구·면적 중 하나만 충족

구체적인 시·군 통합 기준은 △통합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인접 지역이었던 통근 통행이 많은 지역 △특별시·광역시나 국가·사도 계획에 따라 행정관할권으로 다른 지역 등 9가지다.

전체회의에서 통합 기준안을 의결해 확정하면 읍에 맡기지 자치단체별 논의와 부표권을 가진 주민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편추진위에 통합을 건의하는 형식을 띤다.

이후 개편추진위는 건의안을 토대로 최종 통합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지방선거 이전인 2013년 6월까지 광역의 통합 검토 또는 자치단체간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 단장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 기준에 너무 세부적이어서 원하지 않는 곳을 포함시키거나 원하지 않는 곳이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 "시·군·구 자율 통합의 원칙이던 최대의 자선으로 통합 연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통합 기준을 최종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일 전체회의서 통합 기준안 논의

인구와 면적 등 두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1개로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

19.2 X 19.3 cm

우려하였던 바와 같이 대도시가 더욱 확장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광역시·도간 경계를 넘어 통합을 허용하게 되면, 역사적 뿌리가 같았던 지역들이 다시 통합할 수 있게 되고, 구역의 자연경계를 이루던 하천 및 산 등을 통합 자치단체의 발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특·광역시·도간 경계를 넘어 통합을 허용하는 것은 통합의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통합논의를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통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넷째, 국가는 통합기준만 정하고 통합 희망 시군이 자율적으로 통합절차를 수행하느냐 혹은 중앙정부가 이 기준에 따라 통합을 권고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자율방식의 장점은 첫째, 구역개편에 관한 자치권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둘째, 통합 희망 시군 내에서 상향식(bottom-up)의 논의가 전개됨으로써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혼란이 적을 수 있으며, 셋째, 통합 논의를 해당 지역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의 복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권고방식의 장점은 첫째,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면 통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둘째, 통합을 권고하는 주체의 판단이 선행되어 있어서 통합에 있어서 외부지원을 확보하기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쟁점들은 통합기준의 개발·적용 시에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은 중앙과 지방에 따라서 또는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이다. 따라서 통합기준의 방향 정립에 관한 논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군구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통합기준의 설정은 특별법의 범주 내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카페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지원예산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서 남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총 821억 64백만원으로 시 전체예산대비 2.98%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고수준이다.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예산의 토대위에 단순한 복지비용의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도서관, 우체국, 건강카페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행복충전소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통해 2011년도 현재 458명이 스스로의 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들 사업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카페,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행복충전소는 대전광역시가 발굴한 일자리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

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무지도요원제를 운영, 장애인 10명당 1인의 직무지도요원을 두어, 총 21명의 비장애인 일 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표 1〉 대전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2010년도		2011년도		증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75	1,743	458	2,284	182	541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88	1,000	90	1,043	2	43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	37	56	77	147	39	91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도서관, 우체국, 건강카페)	100	111	211	404	111	293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50	576	50	600	-	24
행복충전소 운영	-	-	30	90	30	90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일자리창출 가운데서도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건강카페 사업이다. 대전광역시가 2011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염홍철 시장이 전년도 일본 삿포로시를 방문했을 때 청사 로비에서 장애인이 일하는 카페를 보고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대전형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3호점까지 개점한 건강카페는 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내에서 사회적기업이 직접 만든 빵과 커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금년 2월에 개점한 1호점(시청점)의 경우 사회복지사 2명과 장애인 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250~300여명이 이용하여, 월평균 3천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는 것, 내방객들이 우리밀빵, 쿠키 등 웰빙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건강카페사업을 지속화하고, 또 확산시키

〈표 2〉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개점 현황

구분	1호점(시청점)	2호점(하나은행점)	3호점(평생교육문화센터점)
위치/규모	시청1층, 30.5㎡	본점 1층, 23.5㎡	센터 1층, 20.2㎡
개점일시	2011.2	2011.5	2011.7
설치비	69,873천원	70,000천원	25,000천원
연임대료	7,104천원	6,000천원	3,000천원
종사자	10명(사회복지사2, 장애인8)	6명(장애인부모회원2, 장애인4)	3명(사회복지사1, 장애인2)
1일 이용자	250~300여명	100여명	80~90여명
월평균매출액	3천만원	7백만원	6백만원

건강카페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 건강카페에 자체고용하는 인원수만큼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1인 월 20만원, 월 44시간). 또한 대전보건대학에 바리스타 교육을 의뢰하여 현재 20명이 사전 교육을 받고 있다.

기 위하여 이를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청사에 설치협조를 의뢰하는 등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건강카페사업은 이를 운영해 나갈 사회적기업의 존재, 적정 수익의 창출 등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

〈표 3〉 건강카페의 장애인 고용현황

구분	장애인 고용(명)			운영자	
	계	시 지원	자체고용	사회적기업	장애인단체
계	14	6	8	2	1
시청점(1호점)	8	4	4	1	
하나은행점(2호점)	4	2	2		1
평생교육문화센터점(3호점)	2		2	1	

대전광역시의 건강카페는 이용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커피향 그윽한 로비가 부드러운 청사 이미지를 제공한

이지만, 대전광역시의 지원노력,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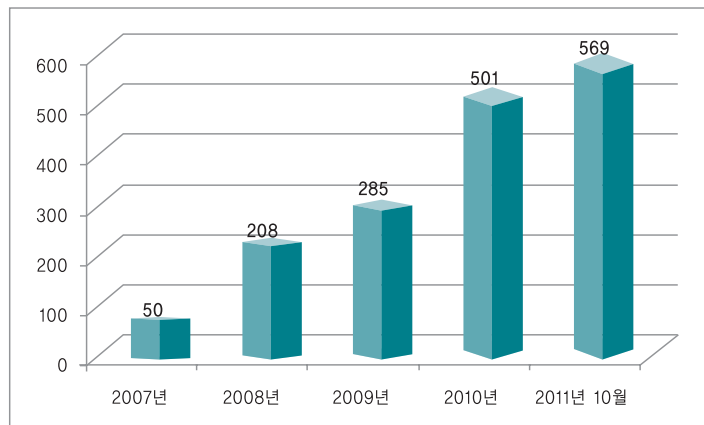
도시통계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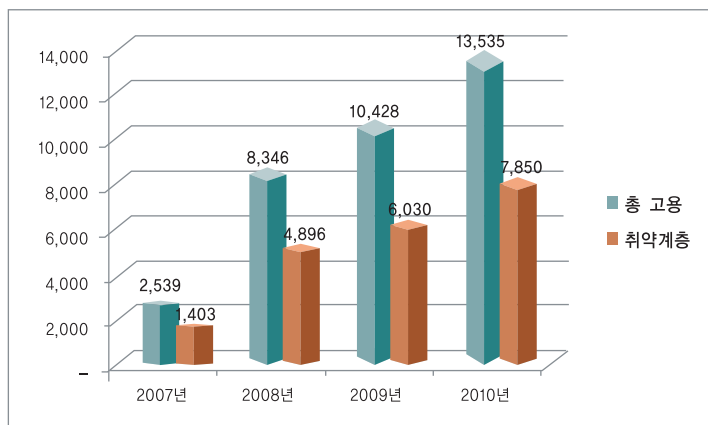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일컫음
 -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되었음
-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2011년 10월 현재 569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음(고용노동부, 2011)
 - 2007년 50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은데 이어, 2008년 208개, 2009년 285개, 2010년 501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어 있으며, 2011년 3/4분기 제3차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을 포함, 총 569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음
- 사회적 기업의 총 고용현황은 2010년 기준 총 13,535명으로 이 가운데 약 58%인 7,850명이 취약계층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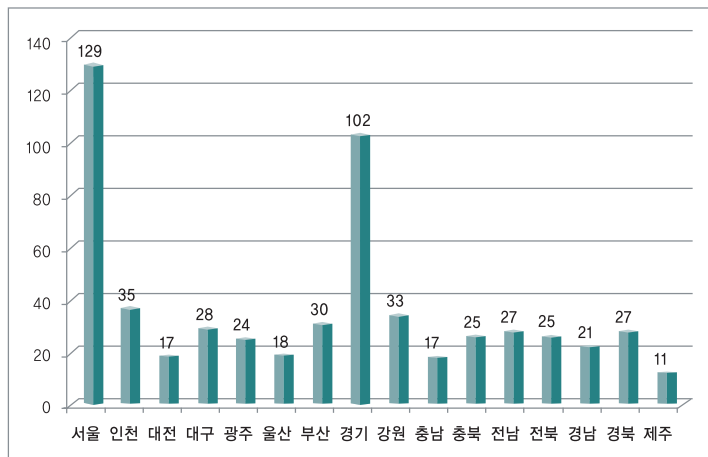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2011년 10월 현재)



〈그림 2〉 한국 사회적 기업의 고용 현황

2. 시도별 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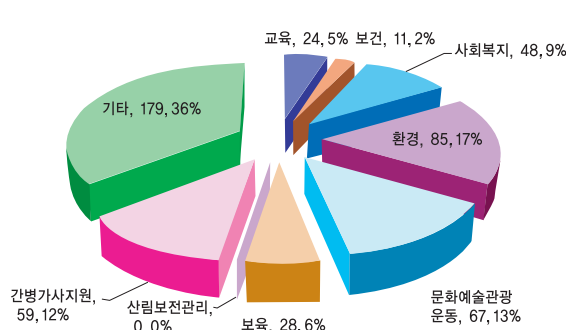
-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129개로 전국 대비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 102개(17.9%), 인천 35개(6.2%)로 수도권 지역이 높게 나타남(고용노동부, 2011)
- 서울 · 인천 ·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266개로 전국 대비 46.7%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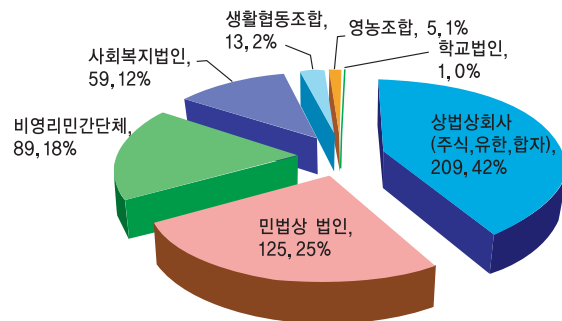
〈그림 3〉 시도별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 (2011년 10월 현재)

3. 유형별 사회적 기업 현황

- 고용노동부가 구분한 9개 업종 유형에 따라 사회적기업 업종 유형을 살펴보면, 기타분야(179개, 35.7%)를 제외하고는 환경분야(85개, 17%)의 사회적 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사회적기업연구원, 2010)
- 다음으로 문화/예술/관광/운동 분야가 13.4%(67개)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간병/가사지원(59개, 11.8%), 사회복지(48개, 9.6%), 보육(28개, 5.6%), 교육(24개, 4.8%)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기타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갑, 휴지, 비누 등 제조업이 50개, 도시락 및 반찬 등 식품 제조업이 54개로 제조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한편 조직 형태별로 살펴보면,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가 209개(4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법상 법인(125개, 25%), 비영리민간단체(89개, 17.8%), 사회복지법인(59개, 11.8%), 생활협동조합(13개, 2.6%), 영농조합(5개, 1%) 등으로 나타남(사회적기업연구원, 2010)



〈그림 4〉 사회적 기업 업종 유형



〈그림 5〉 사회적 기업의 조직 유형

지방자치단체 동향(9월)

하동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지방세 체납액 4조 806억(서울신문 9월 21일)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9월 20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3조 2134억원에서 2008년 3조 4096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9년에는 조금 감소했으나, 2010년 3조 4059억원으로 다시 늘기 시작하였고 올 6월 현재 4조 806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체납 사유로는 납세 기피가 35%로 가장 많았고 '능력 상실' 25%, '소송계류 불복 청구' 15%, '당사자의 행방불명' 11%가 뒤를 이었음. 특히 10억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7년 42명, 2009년 55명, 2010년 78명으로 최근 4년간 85.7% 증가하고 있었으며 1억원이상 체납자도 최근 4년간 36.6%가 늘어나는 추세였음
- 올해 6월 현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였으며 그 액수가 1조 2802억원에 달했음. 서울(1조 29억원), 경남(2255억원), 인천(2145억원), 부산(1930억원) 등도 체납액이 많은 지역이었음

▶ 지방의회, 재정난에도 의정비 인상(서울신문 10월 4일)

- 전국 지방의회의 32%가 내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하고 있으며, 의회의 24%는 아직 의정비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10월 3일 현재,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약 79곳(32.4%)이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이며,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곳은 106곳(43.4%)이었고 나머지 59곳(24.2%)은 아직 인상이나 동결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음
-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대형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임
-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군의회를 비롯한 양주·안성·의정부 등 12개 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양평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5%로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열악하지만, 양평군의회는 약 500만원 이내(현 1인당 3102만원)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양주시의회(3731만원), 안성시의회(3345만원), 의정부시의회(3865만원), 이천시의회(3640만원), 과천시의회(4048만원) 등도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임
- 한편 대형 지역 사업을 실시하면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들도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음. 용인시(경전철과 공공청사 건립 등), 인천시(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 김해시(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로 향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연평균 700억원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 등도 힘든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몇 년째 급여가 동결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든 동정론도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인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됨



연구원동정

10월 연구원 소식

▣ 제4차 한일 지방자치제도 연구회

- 일시: 2011. 10. 14(금) 14:00~17:30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 주제: 한·일 커뮤니티 과제와 대응책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 발표 - 세션 1: 한국 측 발표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향후 발전방향
- 세션 2: 일본 측 발표 (요코미치 기요타카: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 일본의 커뮤니티 정책

▣ KRILA 자치포럼 개최 (제5차)

- 일시: 2011. 10. 17(월) 16:30~18:00
- 강연: 황인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협력관)
- 주제: 제주도 내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 일시: 2011. 10. 19(수)~20(목) 13:30
- 장소: 청주대학교
- 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의 변화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시스템의 변화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KRILA 교육연수 [담당자: 이해선/ 02-3488-7353]

제 4기 지역공공디자인 교육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일시: 10.5(수) ~ 10.7(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제 4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일시: 10.26(수) ~ 10.28(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제 6기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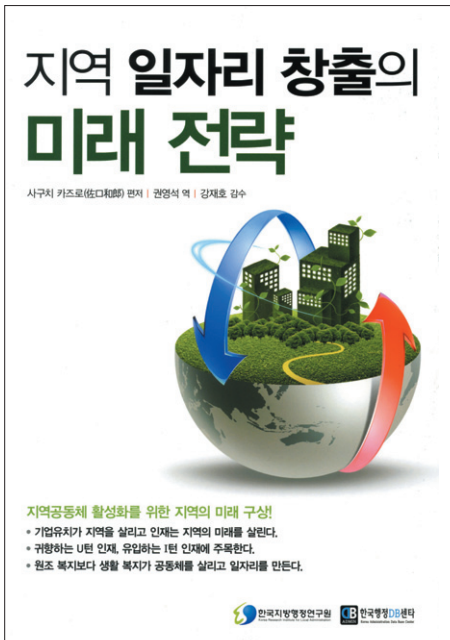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일시: 10.19(수) ~ 10.21(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번역서 발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을 발간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와 산업·고용'을 창출한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일본의 성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인구 12만 명의 오이타현 분고다카다(豊後高田), 시가현의 나가하마(長浜)에 한 해 동안 25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경이적인 사실' 이 바탕이다. 특히, 이 책은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려는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선진사례를 제공하는 본 책자가 지역일자리 창출에 부심하고 있는 한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현재 연구 중인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의 결과 역시 우리나라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부족지역의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성과가 지방정책 수립과 적용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의정연수센터

운영방법

- 대상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공무원
- 방법 ① 방문교육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대상자와 교육장소, 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의정연수센터 교수진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② 집합교육 : 교육 신청하여 연구원에 방문하셔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과정

- 방문교육

개요	세부내용		
기간	1일~2일		
교육 과정	지방재정력 분야	지방재정관리 혁신	고령화사회와 지방재정 운영전략
			성과중심 예산제도 운용 및 활용방안
			지방재정 위기와 대응방안
			광특회계 운영과 지방의 대응
	지방경쟁력 분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공공감사체계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컴퓨터활용 감사기법
			감사계획 수립방법 및 감사기법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관리 개요와 자체평가의 이해
			성과평가 지표개발의 원칙 및 방법
			지표개발 실습
			지표별 가중치 설정과 평가기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제고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이해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지역경제발전 분야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운영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설립과 육성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운영과 지속방안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지역발전의 현재 및 미래환경의 이해	
		광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지역개발 자원	
		창조 지역발전의 이해, 연계 협력 및 광역화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1일과정 : 1인당 10만원 /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교육과정

• 집합 교육

개요 기간	세부내용			
교육 과정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1일차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사업예산제도 : 사업예산 운용요령 · 성과예산 편성방법, 성과관리	
		2일차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과제 복식부기회계제도 : 발생주의 이해,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정보 활용	
		3일차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편성방법 재정분석과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광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지방의 대응 최근 지방재정 변화 동향	
		주민자치센터	1일차	주민자치의 이념과 철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방법 ·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역할
			2일차	마을행사의 기획과 운영 · 우수사례 소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3일차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 소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도입과 활용방안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1일차	기후변화가 주는 파급효과 : 자원고갈과 에너지 기후변화와 생존위기 : 대응과 재난안전 녹색성장의 내용과 정책방향
			2일차	탄소배출 저감사례와 적응방안 : 교통 및 도시계획 지역에너지 자립사례와 적응방안 : 주거 및 산업 지역녹색성장 및 에너지 실천계획
			3일차	대안모색 I : 생활 속의 녹색성장 실천사례와 적응방안 대안모색 II : 지역녹색공동체 형성 방안 지역녹색성장 · 에너지 기본구상
	지역공공디자인		1일차	지역공공디자인의 이해 지역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커뮤니티 디자인수법 적용 방안
			2일차	우수 지역공공디자인 사례 견학
			3일차	국내 · 해외 우수사례 소개(공공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정비방안) 지역공공디자인 개선방안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 · 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3일과정 : 1인당 19만원 (* 주민자치위원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 교육이수 실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7호)에 따라 '상시학습 수료' 로 인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소식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메일 : yjtak@krila.re.kr

- 전 화 : 02-3488-7361